

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

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만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별지 제14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만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의무소방대관리규칙 【별지 제13호서식】 보 안 서 약 서(제23조제1항관련) 나는 . . .자로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. 1. 나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. 2.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근무중 알게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. 3.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.	의무소방대관리규칙 【별지 제13호서식】 보 안 서 약 서(제23조제1항관련) --- - - - - --- - - - - . 1. --- - - - - . 2. --- - - - - --- - - - - . 3. --- - - - - --- - - - - --- . 4. 다만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다.			ㄱ.		
			4. 다만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		
			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		
			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		
	년	월 일		-	-
서 약 자	소 속 :	계급 :	---	---	---
	생 년 월 일 :	군번 :		-----	---
	성 명 :	서명 또는 인		---	-----
서약집행관	소 속 :		-----	---	
	계 급 :			---	
	성 명 :	서명 또는 인		---	-----
210mg×297mm[백상지80g/m ²]			210mg×297mm[백상지80g/m ²]		